

연차휴가 제도의 이해

2023



1. 연차유급휴가란

-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1년간 805 이상 출근하면 15일, 이후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1일씩 가산하여 지급하되 연차휴가 일수 총 한도를 25일로 제한.
- 단, 1년 미만 근속자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년 근무시 신규로 15일을 부여함(2017.5.30. 이후 입사자부터)
*** 만 1년 근무 후 퇴사시에는 월 단위 연차 11개만 발생함(1년을 초과 근무해야만 신규 15일 발생)**
- 월 단위 연차, 연 단위 연차 모두 일단 발생하면 미사용시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함

2.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방법

-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 발생하고 1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이 부여됨. 첫 1년을 제외한 매 2년마다 1일 씩 휴가가 가산되고 최대 25일을 한도로 함. '1년'이란 1년의 총 일수에서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공휴일) 및 약정휴일(노사간에 휴일로 하기로 정한 날)을 제외한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를 말하며, '8할 이상 출근'이란 소정근로일수에서 출근한 날이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됨**

근속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발생일수	매월 개근시 1일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3. 근속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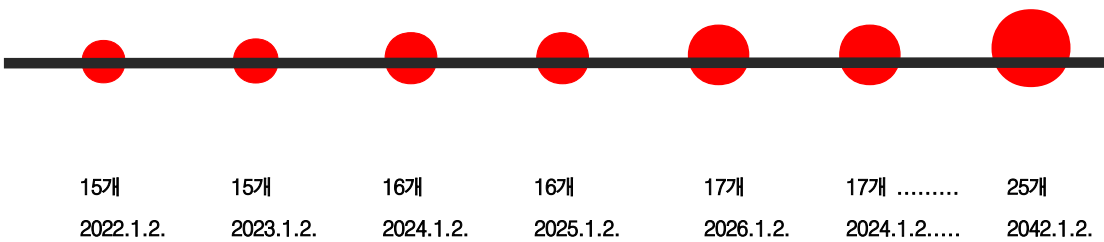
○ 1년 미만 근무자인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2021년 1월 2일 입사자>



○ 첫 1년을 포함, 전년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신규 발생하고, 입사 첫 해를 제외한 매 2년마다 1일 씩 휴가가 가산됨. 휴가 최대일수는 25일을 넘지 아니함.

<2021년 1월 2일 입사자>



4.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기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함.

○ 사용촉진조치 절차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자 및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의 경우(2년차 이상)(근기법 제61조 제1항)

i)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7.1)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와 휴가 사용 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별첨. 미사용 휴가 및 시기 지정 통보서(1차))**

ii) 사용자의 시기 지정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iii) 사용자가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 전에 휴가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별첨. 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2차))**,

iv) **휴가사용지정일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한다.**

<회계연도 기준(1.1.-12.31) 연차휴가 부여시 사용촉진 절차>

<1차 촉진> (사용자 → 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근로자 → 사용자) 사용시기 지정·통보	<2차 촉진> (사용자 →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7.1-7.10. (6개월 전, 10일간)	10일 이내	10.31.까지 (2개월 전)

②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근기법 제61조 제2항)

- i)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와 휴가 사용 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별첨. 미사용 휴가 및 시기 지정 통보서(1차))**
- ii) 사용자의 시기지정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 iii)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로 휴가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 통보하고, **(별첨. 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2차))**
- iv) 휴가사용 지정일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한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1월 1일 입사자 기준)>

	<1차 촉진> (사용자→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근로자→사용자) 사용시기 지정·통보	<2차 촉진> (사용자→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연차 9일	10.1.-10.10. (3개월 전, 10일간)	10일 이내	11.30.까지 (1개월 전)
연차 2일	12.1.-12.5. (1개월 전, 5일간)	10일 이내	12.21.까지 (10일 전)

5. 80% 출근율 미만자의 연차휴가

-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개근한 달수만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6. 연도 중간 퇴사자의 연차휴가

- 입사 첫 해에 중간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분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함.

EX. 2019.1.5. 입사 ~ 2019.6.30. 퇴사한 근로자가 연차를 2개 사용한 경우

: 월 단위 연차 4개 중(2월 5일, 3월 5일, 4월 5일, 5월 5일, 6월 5일 각 1개씩 발생) 사용분 2개를 제외한 3개 분의 연차수당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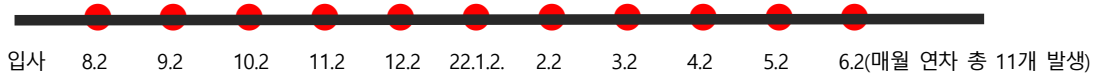
- 입사 2년차 중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한 연차휴가 11개 + 만 1년 근무로 발생한 15개 연차휴가 중 미사용 분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함.

EX. 2019.1.1. 입사 ~ 2020.6.30. 퇴사한 근로자가 연차를 총 2개 사용한 경우

: 2019년 월 단위 연차 11개, 2020년 1월 1일 발생한 연차 15개 중에서 2개를 제외한 24개 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지급

사례 1. 연차휴가 계산(입사일자 기준) - 2021.7.2. 입사 기준

1. 2021.7.2 ~ 2022.7.1(제1기)



- 입사 후 최초 1년간은 매월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총 11개).
- 해당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2. 2022.7.2 ~ 2023.7.1(제2기)



- 2022년 7월 2일자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 해당 휴가 15개는 제2기에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1년간의 사용 기간이 끝난 2023년 7월 2일 수당으로 정산함. 단, 2023년 7월 2일 이전 중도 퇴사시에는 기 발생한 15개에서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함.
- * 2022.7.1.까지만 근무 후 퇴사할 경우 2021.7.2.~2022.7.1.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 15개는 미발생

3. 제3기 이후(가산휴가)

- 입사 1년을 제외한 매 2년마다 기본 15일에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발생함. 연차휴가는 최대 25일까지만 가산되고 그 이후로는 가산없음.

근속	24.7.2.	25.7.2.	26.7.2.	27.7.2.	28.7.2.	29.7.2.	30.7.2.	31.7.2.	32.7.2.	33.7.2.	34.7.2.	...	42.7.2.	43.7.2.
연차 갯수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5	25

사례 2. 연차휴가 계산(회계연도 기준) - 2021.7.2. 입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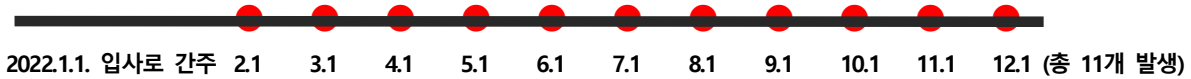
* 회계연도 기준 계산 방식은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계산편의를 위해 도입한 방식이므로 최종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여 법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산하여야 함.

1. 2021.7.2. ~ 2021.12.31(제1기)



- 2021.7.2. ~ 2021.12.31까지 근무 개월 수에 비례하여 15개 연차의 일부를 미리 부여함
 $15 \times 6\text{개월}/12\text{개월} = \text{약 } 7.5\text{일}$

2. 2022.1.1 ~ 2022.12.31(제2기)



- 2022년 1월 1일 입사자로 간주하여 매월 개근시 1개씩 연차휴가 발생(총 11개)

3. 2023.1.1 ~ 2023.12.31(제3기)



- 2023년 1월 1일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이후 가산 공식은 동일함.

○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계산 방식은 어디까지나 회사의 편의를 위한 계산 방식이므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는 법 기준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다시 산정하여 부여하고, 회계연도 기준 방식으로 부여한 휴가가 법 기준보다 더 적다면 추가 보상하여야 함.

미사용 휴가 및 시기 지정 통보서(1차)

성 명		부 서		사 번	
-----	--	-----	--	-----	--

제 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근거하여 상기 근로자의 20 년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통보하는 바입니다.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서식에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시기를 미지정할 경우 회사가 일반적으로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재통보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미사용 휴가 일수

연차유급휴가 발생대상 기간	연차유급휴가 사용대상 기간	발생연차 (A)	사용연차 (B)	미사용 (A-B)
2022.1.1~2022.12.31	2023.1.1~2023.12.31	일	일	일

2.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사용일 표시)

월	사용일	소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 기입예시

7	7월8일, 7월21일	2일
---	-------------	----

20 년 월 일
상기본인 : (인)

() * 귀중

별첨.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2차)

성 명		부 서		사 번	
-----	--	-----	--	-----	--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근거, 20 년 월 일 공지한 미사용휴가일수 및 사용시기 지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상기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회사는 아래와 같이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바이며,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미사용 휴가 일수

연차유급휴가 발생대상 기간	연차유급휴가 사용대상 기간	발생연차 (A)	사용연차 (B)	미사용 (A-B)
		일	일	일

2.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통보

월	사용일	소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 년 월 일

(주)***** 귀중

합의서

____ (“갑”이라 함)와 근로자대표 _____ (이하 “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유급휴가의 대체)에 의거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1. 갑과 을은 “갑”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다음의 특정근로일에 휴무시킨다.

- ① 하기휴가(3일)
- ② ...
- ③ ...

2. 상기 특정근로일이 각각의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1년이 되기 이전의 대체휴일일 경우 1년 후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서 공제토록 한다.

3. 상기 특정근로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연차는 사용치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본 합의서의 대체휴일이 각각의 근로자의 사용가능한 연차일수 보다 상회하거나 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대체휴무를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정상업무를 수행하거나, 무급으로 휴일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

5. 본 합의서는 특별한 변경이 없는 한 매년 갱신된다.

20** . 1 . 1 .

“갑” :

(인)

“을” 근로자 대표

성 명:

(인)

주 소: